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김광수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58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2. 04.

라. 회부일자 : 2020. 2. 12.

2. 제안사유

-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,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,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
-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안내방송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, 2018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,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

-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 의무 및 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'교통약자에 대한 지원' 조항을 신설(안 제5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2. 17 ~ 2020. 2. 24
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) : 원안동의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 및 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 외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

단되어 원안 동의함

-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동일 조항이 기규정되어 있어, 이를 근거로 현재 교통약자 배려 안내 방송 시행중(지하철- 17회/일, 버스- 5~6회/일)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운영자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노력 및 교통약자 배려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고, 지하철보안관이 임산부 배려석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해 양보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내방송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¹⁾(이하 “법”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대중교통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또한 현행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 18조²⁾ 등에서도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

1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,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내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운영자³⁾들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방송 실시⁴⁾ 및 이와 관련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대중교통 운영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전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에서 지하철보안관이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지하철 이용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, 임산부 배려석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지하철보안관이 임산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승객에게 양보를 권고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2)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8조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 제2조(정의) 4. "대중교통운영자"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·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한 자

나.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·관리를 위하여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
4) 「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